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946
----------	-------

발의연월일 : 2026. 7. 14.

발 의 자 : 어기구 · 정춘생 · 손명수
임호선 · 주철현 · 박균택
허성무 · 김주영 · 김의겸
김병주 · 조인철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축전염병 발생 시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방역조치 이행 의무를 부과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가축방역관의 지도에 따라 세척·소독 등의 방역조치를 실시하면 이동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실제 가축사육 현장에서는 가축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해당 가축의 관리·운반·출하 등에 종사하는 고용인력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방역의무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방역조치 이행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한편, 제3종 가축전염병의 경우 지역 내 예찰 대상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인 이동제한 조치 등이 적용되어 농가의 신고 및 협조 유인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며 방역 자원의 배분 또한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음.

이에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에게도 방역조치 이행의무를 명확히 부과하여 현장 방역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위험도 평가 등을 고려하여 긴급한 방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가축의 이동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선택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가의 자율적인 방역의지를 고취하고 가축방역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6제1항 및 제28조의2 등).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유자등은”을 “소유자등과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은”으로 한다.

제28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가축전염병 위험도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확산되어 가축의 생산 또는 건강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긴급한 방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준용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가축전염병 위험도 평가의 대상·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60조제2항제5호의10 중 “준수하지 아니한 자”를 “준수하지 아니한 자(가축의 소유자등에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4호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6. 제17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방역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에 한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의6(방역기준의 준수) ①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의 <u>소유자등은</u>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역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의6(방역기준의 준수) ① - ----- -- <u>소유자등과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은</u> ----- ----- ----- ----- ----- -----.
1. ~ 5. (생 략) ②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의2(제3종 가축전염병에 대한 조치) 제3종 가축전염병에 대하여는 제1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을 준용한다. <u>다만, 가축방역관의 지도에 따라 가축전염병의 전파 방지를 위한 세척·소독 등 방역조치를 한 후 도축장으로 출하하거나 계약사육농가로 이동하려는 경우 이동제한에 관하여는 제19조제1항제1호를 준용하지 아니한다.</u>	제28조의2(제3종 가축전염병에 대한 조치) ① ----- ----- ----- -----. <u>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가축전염병 위험도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확산되어 가축의 생산 또는 건강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u>

<신 설>

제60조(과태료)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동일한 행위가 제1항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우선 적용한다.

1. ~ 5의9. (생 략)

5의10. 제17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방역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5의11.·6.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의5. (생 략)

<신 설>

고 긴급한 방역조치가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에 한정하여 준용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가축전염병 위험도 평가의 대상·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60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5의9. (현행과 같음)

5의10. -----
-----준수하지 아니한 자(가축의 소유자등에 한정한다)

5의11.·6. (현행과 같음)

③ -----

-----.

1. ~ 4의5. (현행과 같음)

4의6. 제17조의6제1항을 위반하

5. ~ 13. (생 략) ④ (생 략)	<u>여 방역기준을 준수하지 아니</u> <u>한 자(가축의 소유자등에게</u> <u>고용된 사람에 한정한다)</u> 5. ~ 13.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	---